

관세사 시험을 위해 다시 쓴 2차 관세법 정오표 Ver 3.0

구분	교재 내용	수정 사항
25페이지	(5) 담보제공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 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에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 담보제공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 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8페이지	(5) 담보제공 세관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 담보제공 세관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72페이지	(2) 확정가격 신고기간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확정 가격'라 함)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정가격 신고기간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확정 가격'이라 함)을 신고하여야 한다.
80페이지	(3) 자료 제출 기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기한의 연장 (5) 제출기한 연장 신청 (6) 제출기한 연장 여부 통지	(3)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 요구 세관장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법 제30조 제1항 각 호(가산요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자료 제출 기한

		<p>(5) 제출기한의 연장 (6) 제출기한 연장 신청 (7) 제출기한 연장 여부 통지 (8) 기한 내 자료 미 제출 시 과세가격 결정</p> <p>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기 (3)에 따른 증명자료를 자료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0조제1항 각 호(가산요소)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 내지 제6방법(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p>
92페이지	<p>1.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법 제5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p>	<p>1.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법 제5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p>
112페이지	<p>1.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법 제58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p>	<p>1.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법 제58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p>
115페이지	<p>① 조사·판정 시 근거 사항 다. 보조금 등의 금액의 정도~ 나.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p>	<p>① 조사·판정 시 근거 사항 나. 보조금 등의 금액의 정도~ 다.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p>
117페이지	<p>1. 상계조치 관련 비밀 취급자료 (규칙 제27조)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p>	<p>1. 상계조치 관련 비밀 취급자료 (규칙 제27조)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p>

145페이지	최빈개발도상국에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른 특혜대상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른 특혜대상국 아프리카에 '남수단' 추가
149페이지	(4) 사후관리 ~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사후관리 ~ 다만, 다음 각 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64, 165페이지	3) 세관장의 통지 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의 청구 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후발적 경정청구 (법 제38조의3 제3항)	3) 후발적 경정청구 (법 제38조의3 제3항) 4) 세관장의 통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의 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 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기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66페이지	7) 세관장의 통지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세관장의 통지 ①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기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71페이지	1. 가산금 (1) 의의 가산금이란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	1. 가산금 (1) 의의 가산금이란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

	한을 경과하였을 때 징수한다.	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징수한다.
173페이지	1) 일반적인 경우 세관장은 수정 또는 경정(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	1) 일반적인 경우 세관장은 수정 또는 경정(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
182페이지	(2) 관세의 면제 범위 관세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세율(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관세의 면제 범위 관세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세율(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63페이지	(1) 사전통지 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관세 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등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관세조사 등)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관세 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등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관세조사 등)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71페이지	2. 과세 전 통지 (1) 의의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4항(경정) 또는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세관장에게 청구	2. 과세 전 통지 (1) 의의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경정) 또는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세관장에게 청구

	<p>납세의무자는 과세 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를 청구할 수 있다.</p>	<p>납세의무자는 과세 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281페이지	<p>(3) 대리인 (법 제126조)</p> <p>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p> <p>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3) 대리인 (법 제126조)</p> <p>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p> <p>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290페이지	<p>(3) 결정 내용 (법 제128조)</p> <p>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① 불복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거나 불복청구를 제기한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p>	<p>(3) 결정 내용 (법 제128조)</p> <p>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①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p> <p>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p> <p>나. 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p>

		<p>다. 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321페이지	<p>(3) 보세화물 적용 규정 준용</p> <p>다음의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장치물품의 폐기, 해체·절단 등의 작업, 장치물품의 폐기, 견본품 반출),</p>	<p>(3) 보세화물 적용 규정 준용</p> <p>다음의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보수작업, 해체·절단 등의 작업, 장치물품의 폐기, 견본품 반출),</p>
330페이지	<p>(3) 관세의 징수</p> <p>세관공무원의 검사 상 필요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3) 관세의 징수</p> <p>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① 상기 규정에 따라 검사상 필요에 의해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p> <p>②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p>
343페이지	<p>(2) 특허의 취소</p> <p>④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특허의 취소</p> <p>④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351페이지	<p>2. 사용신고 등 (법 제186조)</p> <p>② 이때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법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2. 사용신고 등 (법 제186조)</p> <p>② 이때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372페이지	<p>(4) 세관장 및 세관공무원으로 보는 경우</p>	<p>(4) 세관장 및 세관공무원으로 보는 경우</p>

	<p>①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법 제211조 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p> <p>②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세관공무원으로 본다.</p>	<p>㉔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법 제211조 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p> <p>㉔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세관공무원으로 본다.</p>
374페이지	<p>1) 경쟁입찰의 방법</p> <p>① 의의</p> <p>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p>	<p>1) 경쟁입찰의 방법</p> <p>① 의의</p> <p>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p>
375페이지	<p>2)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p> <p>① 의의</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가.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p>	<p>2)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p> <p>① 의의</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가.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p>
392페이지	<p>(3)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p>	<p>(3) 원산지 제도의 필요성</p>
399페이지	<p>(4) 특혜관세 등 적용 배제</p> <p>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p>	<p>(4) 특혜관세 등 적용 배제</p> <p>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p>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4항 (경정) 및 법 제39조 제2항(부족액 징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 (경정) 및 법 제39조 제2항(부족액 징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400페이지	(5) 서류 송부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5) 서류 송부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항 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412페이지	4. 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 ㉔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4. 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 ㉔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㉕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세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467페이지	(2)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제2항 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276조(허위신고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제3항 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276조(허위신고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86페이지		(2)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264조의2) ~

		<p>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신설)</p>
507페이지	<p>10.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법 제327조의4)</p> <p>①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0.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법 제327조의4)</p> <p>①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510페이지	<p>4)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p> <p>상기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 (임직원과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5)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p>	<p>4)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p> <p>상기 규정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행사하는 자 (임직원과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4)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p> <p>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330조)</p>

		<p>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①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②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p> <p>④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⑤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p> <p>⑥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증계사업자</p> <p>⑦ 법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526페이지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⑥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562페이지	<p>(5) 환급금의 총당</p> <p>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함)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총당할 수 있으며, 총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5) 환급금의 총당</p> <p>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총당할 수 있으며, 총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가.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p> <p>나. 「관세법」 제 28 조제 4 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p> <p>⑤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상기 나호의 금액에 총당할 때</p>

		에는 환급신청자의 증당 신청을 받아 증당한다. 이 경우 증당된 세액의 증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	--	---

2017. 3월 개정 사항 반영

구분	교재 내용	수정 사항
9페이지	<p>2)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p> <p>①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이 체납되어 있을 것</p> <p>② 체납된 내국세 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p> <p>③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p>	<p>2)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p> <p>①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이 체납되어 있을 것</p> <p>② 삭제</p> <p>③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p>
25페이지	<p>(5) 담보제공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 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p>(5) 담보제공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28페이지	<p>(5) 담보제공 세관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p>(5) 담보제공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 (2) 잠정가격의 신고 대상
- ④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 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잠정가격 신고 시 제출 서류

- (2) 잠정가격의 신고 대상
- ④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⑤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 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상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①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p>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가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나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을 것</p> <p>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p> <p>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p> <p>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p> <p>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p> <p>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p> <p>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p> <p>(4) 잠정가격 신고 시 제출 서류</p>
99페이지	<p>(6) 덤핑방지조치</p> <p>1) 의의</p> <p>③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p>	<p>(6) 덤핑방지조치</p> <p>1) 의의</p> <p>③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p>
100페이지	<p>③ 적용 기간</p>	<p>③ 적용 기간</p>

	<p>~ 다만, 동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 다만,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p>
102페이지	<p>⑨ 약속 불이행 시 조치 사항 수출자가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⑨ 약속 불이행 시 조치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영 제66조제2항 및 제3항(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준용한다. 가.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 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나. 가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p>
105페이지	<p>다.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p>	<p>다.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을 제외한다.</p>
141페이지	<p>(3) 적용 대상 국가 ①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부탄 ② 중동: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③ 대양주: 나우루 ④ 아프리카: 코모로, 에디오피아, 리베리아, 소말리아 ⑤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p>	<p>(3) 적용 대상 국가 ① 아시아: 부탄 ② 중동: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③ 대양주: 나우루 ④ 아프리카: 코모로,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⑤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덴마크(그린란드)</p>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141페이지	<p>(4) 적용 대상 물품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양허표)의 가 또는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p>	<p>(4) 적용 대상 물품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양허표)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p>
151페이지 152페이지	<p>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상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및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p> <p>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마. 영 제101조제4항(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관여한 경우 (신설)</p> <p>기존 ③ ④ ⑤ ⑥은 ⑤ ⑥ ⑦ ⑧ 변경</p>

162페이지	<p>② 보정이자율 보정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천분의 18)로 한다.</p>	<p>② 보정이자율 보정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천분의 16)로 한다.</p>
177페이지	<p>2. 위원의 해촉 (영 제43조)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세관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그 신분을 상실한 때 ③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때 ④ 기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p>1-1. 위원의 임기 (영 제42조) 위원 중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상공계의 대표,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p> <p>2.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영 제43조)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영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⑥ 영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여한 경우 ⑦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203페이지		신설 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월드컵축구대회 중 2017년에 개최되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각국 축구협회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26페이지	1)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 용도세율의 적용(법 제83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법 제90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법 제91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법 제93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법 제95조), 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 및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월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 용도세율의 적용(법 제83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법 제90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법 제91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법 제93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법 제95조), 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 및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226페이지	2) 장부 비치 3) 설치 또는 사용장소의 변경	2) 반입 기한의 연장 ④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기존 2), 3)은 3), 4)로 변경</p>
232페이지	<p>(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p> <p>② 보정신청(법 제38조의2 제4항)</p>	<p>(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p> <p>② 보정신청(법 제38조의2 제6항)</p>
261페이지	<p>1.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영 제135조의4) ~</p> <p>②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p> <p>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p>	<p>1.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영 제135조의4) ~</p> <p>②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p> <p>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p>
267페이지	<p>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p>	<p>② 나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p> <p>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p> <p>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73페이지	(5) 대리인 (법 제126조 준용)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대리인 (법 제126조 준용)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89페이지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89페이지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 영 제148조제5항(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참석한 경우
349페이지	1)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는 다음 각 항의 어느

	<p>을 말한다.</p> <p>①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p> <p>②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p> <p>③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p>	<p>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p> <p>①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p> <p>②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p> <p>③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p>
376페이지	<p>② 다음 회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불인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p>	<p>② 다음 회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p>
388페이지	<p>(2)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요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② 「해운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p>	<p>(2)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요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② 「해운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p>
404페이지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제2항 다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④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p> <p>기존 ③, ④ 는 ⑤, ⑥ 으로 변경</p>
408페이지	<p>2) 신고서 제출 등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②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③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④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2) 신고서 제출 등 ①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나.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라.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410페이지	<p>1) 제소사실 입증의 경우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 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 등을 요청</p>	<p>1) 제소사실 입증의 경우 세관장은 통관보류 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 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 등을 계속할</p>

	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 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413페이지	(2) 대상물품 ① 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③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대상물품 ① 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③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④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416페이지	②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②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417페이지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상기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③ 상기 제2항 나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상기 제2항 나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p>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기존 ⑤, ⑥은 ⑥, ⑦로 변경</p>
420페이지	<p>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영 제2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p>	<p>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영 제246조)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p>
424페이지	<p>(4) 불법행위 발생 우려 물품의 수출신고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1) 의의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2) 반입 후 신고 물품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p> <p>①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②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p>

		<p>3) 반입 제외 대상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4) 세부 사항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489페이지	<p>소.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p> <p>오.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p>	<p>소.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p> <p>오.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p> <p>(신설)</p> <p>수. 영 별표 3 제49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p> <p>우. 영 별표 3 제50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p> <p>주. 영 별표 3 제51호에 따른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p> <p>추. 영 별표 3 제52호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p>

505페이지	<p>2.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규칙 제85조)</p> <p>①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p>	<p>2.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규칙 제85조)</p> <p>①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p>
520페이지	<p>1)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p>	<p>1)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는 날부터 1년 내(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p>
557페이지	<p>(2) 환급신청자</p>	<p>(2) 환급신청자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p>
569페이지	<p>4) 자진신고 시 환급가산금</p> <p>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p>	<p>4) 자진신고 시 환급가산금</p> <p>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p>

	<p>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p> <p>②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천분의 18)로 한다.</p>	<p>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다음 날부터 자진 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p> <p>②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천분의 16)로 한다.</p>
--	--	---